문서번호	GCH-시행세칙-28	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	총장
제정일자	2019.12.20.		
개정일자	2023.11.15.		
면 수	15		

제1조(목적) 본 시행세칙은 '교원업적평가규정'(이하 규정이라 한다.)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정의) 본 시행세칙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

1. 정년방식 전임교원: '전임교원인사관리규정' 제2조 1호에 근거한 임용계약을 체결한 전임교원(이하 정년방식 전임교원이라 한다.)
2. 비정년방식 전임교원: '전임교원인사관리규정' 제2조 2호에 근거로 임용계약을 체결한 전임교원(이하 비정년방식 전임교원이라 한다.)
3. 정년방식 전임교원 중 대학본부 보직자 전임교원: (이하 대학본부 보직자라 한다.)

제3조(정년방식전임교원개인활동평가) 정년방식 전임교원 개인활동 평가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.

1. '연구 및 교육활동 영역'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[개정 2023.11.15.]

<table>
<tr><th>세부
평가항목</th><th>배점</th><th>세부평가기준</th><th>교원제출 증빙자료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학술활동
실 적</td><td>최고
10점</td><td>□ 학술활동 실적 평가
<table>
<tr><th rowspan="2">발표 논문 등재지</th><th colspan="4">인정율</th></tr>
<tr><th>100%</th><th>70%</th><th>50%</th><th>50%미만</th></tr>
<tr><td>국제전문학술지
(SCI급/SCOPUS 학술지)</td><td>10점</td><td>8점</td><td>7점</td><td>5점</td></tr>
<tr><td>국내전문학술지
(한국연구재단 등재지・후보지)</td><td>7점</td><td>5점</td><td>3점</td><td>2점</td></tr>
<tr><td>국제일반학술지
(ISSN 번호부여 필)</td><td>7점</td><td>5점</td><td>3점</td><td>2점</td></tr>
<tr><td>국내일반학술지
(ISSN 번호부여 필)</td><td>5점</td><td>3점</td><td>2점</td><td>1점</td></tr>
<tr><td>기타 논문지
전공관련 전문저서 및 역서
연구보고서</td><td>4점</td><td>2점</td><td>1점</td><td>0점</td></tr>
</table>
□ 해당기간 교과목 운영과 관련한 교수 포트폴리오 개발: 1점/건

☞[참고] 학교의 실적으로 반영되는 중앙정부사업 사업계획서나 사업보고서: 국내전문학술지 논문과 동일하게 반영
☞[참고] 학교의 실적으로 반영되는 지자체나 산업체와 관련 사업계획서나 사업보고서: 국내일반학술지 논문과 동일하게 반영
☞[참고]논문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업은 학내기관을 통하여 관리되며,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부합되는 사업에 한함
- 교원확보, 실험실습기자재 확보, 강의실/실습실 환경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
- 1개 학과 이상의 교육과정 개발(개편) 및 운영
- 대학의 학사제도 개선 및 시범 운영(취업 제고 등)
- 산업체, 연구소, 공공기관 등과의 산학협력(인적교류, 물적교류 등) 수행
- 대학의 교수와 학생이 참여하는 연구개발(R&D) 수행
☞[참고]인정률은 주저자, 교신저자, 공동저자 구분없이 단독 100%, 저자수2인 70%, 저자수3인 50%, 저자수4인이상 50%미만으로 함</td><td>□ 학술활동 실적물 사본</td><td>연 간
전체내용
으로평가</td></tr>
</table>

세부 평가항목	배점	세부평가기준	교원제출 증빙자료	비고
강의활동 실적	최고 5점	□ 주당 강의시수 평가 ○ 주당 책임강의시수를 강의할 경우: 3점 ○ 주당 책임강의시수에서 1시간 초과마다 기본점수 3점에서 1점씩 가산 ○ 주당 책임강의시수에서 1시간 미달마다 기본점수 3점에서 1점씩 감산 □ 전자출강시스템의 결강률 현황에 따른 평가 ○ 결강률 30% 이상: 3점 감점, 결강률 20%~30% 미만: 2점 감점, 결강률 10%~20% 미만: 1점 감점 ☞[참고] 주당 책임강의시수=(1학기 책임강의시수+2학기 책임강의시수)/2	□ 학사운영처 제출 ➡ 교원 강의활동 및 전자출강시스템 활동점수	연간 전체내용으로평가
강의평가 실적	최고 5점	□ 강의평가실적 항목 평가점수 : 과목별 강의평가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 환산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[개정 2022.11.01.] 강의평가 평균 / 평점 / 강의평가 평균 / 평점 0~70미만 / 0점 / 82.5이상~85.0미만 / 3점 70.0이상~75.0미만 / 0.5점 / 85.0이상~87.5미만 / 3.7점 75.0이상~77.5미만 / 1.1점 / 87.5이상~90.0미만 / 4.2점 77.5이상~80.0미만 / 1.7점 / 90.0이상~95.0미만 / 4.7점 80.0이상~82.5미만 / 2.3점 / 95.0이상 / 5점 ☞[참고] 현장실습평가 및 교육혁신원에서 인정하는 다양한 교수법 적용 교과목은 제외	□ 학사운영처 제출 ➡ 교원강의평가자료(별지서식 제4-9호)	학기별 평균의 평균으로 평가
소 계	최고 20점	각 세부평가항목의 총 합산결과를 최고 20점까지 인정		

2. '학생생활 및 취업지도활동 영역'에 대한 세부평가기준

세부 평가항목	배점	세부평가기준	교원제출 증빙자료	비고
학과지도학생 자격증취득 실적	최고 5점	□ 지도학생이 해당 기간 동안에 신규취득한 자격증 수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평가 **학과지도학생 자격증취득실적 항목 평가점수 =** **(신규취득자격증수 / 연간평균지도학생수) × 10** □ 위의 결과에 지도학생 수에 대한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인정 ○ 연간평균 지도학생수가 50명 이상인 경우는 위의 취득률을 130%까지 환산계산 한 후 평점을 평가 ○ 전체학년 지도학생수가 40명 이상인 경우는 위의 취득률을 120%까지 환산계산 한 후 평점을 평가 ○ 전체학년 지도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경우는 위의 취득률을 110%까지 환산계산 한 후 평점을 평가 ○ 전체학년 지도학생수가 20명 미만인 경우는 위의 취득률을 90%까지 환산계산 한 후 평점을 평가 ○ 전체학년 지도학생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위의 취득률을 80%까지 환산계산 한 후 평점을 평가 ☞[참고] TOEFL(CBT) 200점, TOEFL(IBT) 80점, TOEIC 600점, TEPS 3+급, TOPIK 3급, HSK 6급, JPT 500점, JLTP 2급 이상은 취득자격증으로 인정함 ☞[참고]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차, 2차 시험으로 구분된 경우는 1차 시험을 합격하면 취득자격증수를 0.5로 인정함 ☞[참고]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인턴십 기간 1개월당 1개의 자격증 신규취득으로 인정함 ☞[참고] 운전면허증 및 졸업에 따라 자동으로 취득하는 자격증(면허증)은 취득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음. 단, 정규과정 외의 외부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하는 자격증은 인정함	□ 취득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 발급기관 발급확인서 □ 학사운영처 제출 ➡ 교원지도학생 현황(별지서식 제4-10호) □ 간호사면허증 국시원 제공자료	연간전체 내용으로 평가

세부 평가항목	배점	세부평가기준	교원제출 증빙자료	비고
		☞[참고] 총장에 의해 학과의 지도교수 배정 특수성이 인정되어 제1・2지도교수를 운영하는 경우 제2지도교수는 위 결과의 50%에 해당하는 평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함. 단, 이때 제2지도교수로서의 실질적인 활동을 교원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제2지도교수는 별지서식 제4-17호 재학생 경력관리 상담철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.		
학과지도학생 제적・자퇴 현황	최고 5점	□ 해당기간 지도학생 수 대비 제적・자퇴학생 수의 비율로 평가 ○ '제적・자퇴학생수 / 연간평균지도학생수' 비율 0% 이하: 5점 ○ '제적・자퇴학생수 / 연간평균지도학생수' 비율 2% 이하: 4점 ○ '제적・자퇴학생수 / 연간평균지도학생수' 비율 4% 이하: 3점 ○ '제적・자퇴학생수 / 연간평균지도학생수' 비율 6% 이하: 2점 ○ '제적・자퇴학생수 / 연간평균지도학생수' 비율 8% 이하: 1점 ○ '제적・자퇴학생수 / 연간평균지도학생수' 비율 10% 이하: 0점 ☞[참고] 총장에 의해 학과의 지도교수 배정 특수성이 인정되어 제1・2지도교수를 운영하는 경우 제2지도교수는 위 결과의 50%에 해당하는 평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함. 단, 이때 제2지도교수로서의 실질적인 활동을 교원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제2지도교수는 별지서식 제4-17호 재학생 경력관리 상담철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☞[참고] 본 대학 학과구조조정 결과로 인하여 구조조정된 과에서 전과한 학생이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평가에서 제외함	□ 학사운영처 제출 ➡ 교원지도학생 현황(별지서식 제4-10호) □ 학사운영처 제출 ➡ 학과별자퇴학생현황(별지서식 제4-11호)	연간전체 내용으로 평가
학생상담지도 실적	최고 5점	□ **학생상담지도실적 항목 평가점수 = 학생 전체상담횟수 / 20회** ☞[참고] 학사・행정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・저장된 상담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함 ☞[참고] 학사・행정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・저장된 상담 실적과 실제입력일이 3개월 이상 차이나는 기록에 대해서는 불인정함(상담시점 즈음에 실시간에 준하여 기록・저장되어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상담실적에 대해서만 인정) ☞[참고] 단체상담은 학생수 만큼의 삼담횟수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회 상담으로 인정함	□ 학사운영처 제출 ➡ 교원별 학생상담지도실적 자료(별지서식 제4-74호)	연간전체 내용으로 평가
학과지도학생 취업지도실적	최고 10점	□ 지도학생 취업지도평가: 12월 기준 취업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지도학생 취업률 / 평점 / 지도학생 취업률 / 평점 50.0%미만 / 1점 / 70.0%이상~75.0%미만 / 6점 50.0%이상~55.0%미만 / 2점 / 75.0%이상~80.0%미만 / 7점 55.0%이상~60.0%미만 / 3점 / 80.0%이상~85.0%미만 / 8점 60.0%이상~65.0%미만 / 4점 / 85.0%이상~90.0%미만 / 9점 65.0%이상~70.0%미만 / 5점 / 90.0%이상~ / 10점 □ 위의 결과에 지도학생 수에 대한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인정 직전학년도 지도학생수 / 취업률 환산율 / 직전학년도 지도학생수 / 취업률 환산율 25명 이상 / 110% / 15명 이상 / 102% 20명 이상 / 105% / 10명 미만 / 90% ☞[참고] 취업지도실적 근거자료: 산학협력처에서 취합하는 직전학년도 졸업생 취업통계 조사자료(12월 기준 취업률 평가자료)를 활용함 ☞[참고] 창업자 및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 취업실적은 관련증빙자료를 산학협력처로 제출 할 경우 인정 ☞[참고] 총장에 의해 학과의 지도교수 배정 특수성이 인정되어 제1・2지도교수를 운영하는 경우 제2지도교수는 위 결과의 50%에 해당하는 평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함. 단, 이때 제2지도교수로서의 실질적인 활동을 교원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제2지도교수는 별지서식 제4-17호 재학생 경력관리 상담철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	□ 학사운영처 제출 ➡ 교원지도학생 현황(별지서식 제4-10호) □ 산학협력처 제출 ➡ 졸업생 취업 통계 자료 □ 기획처 제출 ➡ 교원별 지도학생 취업현황(별지서식 제4-64호)	직전학년도 졸업생의 6・12월 취업률로 평가

세부 평가항목	배점	세부평가기준	교원제출 증빙자료	비고
소 계	최고 20점	각 세부평가항목의 총 합산결과를 최고 20점까지 인정		

3. '산학협력활동 영역'에 대한 세부평가기준

세부 평가항목	배점	세부평가기준	교원제출 증빙자료	비고
산학협력체 관리실적	최고 5점	□ 가족회사 및 임상실습 업체방문 회당 0.5점 □ 산학협력 가족회사체결횟수: 건당 0.5점 ÷ 교원의 수	□ 현장실습지도방문결과보고서 및 출장복명서, 가족회사 협약서 사본	
산학협력 공동활동 실적	최고 20점	**□ 산학협력 산업체 전문가와 교재·교안 공동개발 : 건당 1점 (최고 3점)** ○ 산식 : (건당 1점/교내 개발자 수) **□ 정부/산업체 지원 산학협력(연구,교육,기술개발 등) 프로젝트 제안 : 건당 2점 (최고 4점)** ○ 산식 : [{건당 2점(총괄책임자:100%, 책임연구원급:50%)}/참여기관수] **□ 정부/산업체 지원 산학협력(연구,교육,기술개발 등) 프로젝트 수주 및 수행 : 건당 3점 (최고 6점)** ○ 산식 : [{건당 3점(총괄책임자:100%, 책임연구원급:50%)}/참여기관수] **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(최고 8점)** ○ 출원 : 특허(건당 2점), 실용신안(건당 1점), 그 외(건당 0.5점) ○ 등록 : 특허(건당 3점), 실용신안(건당 1점), 그 외(건당 0.5점) **□ 산업체연계 캡스톤디자인 관련 활동 (최고 4점)** ○ 산업체연계 캡스톤디자인 지도: 건당 0.5점(최고 2점) ○ 산업체연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참가(출품) : 교내대회 (건당 0.5점), 교외대회(건당 1점) (최고 2점) **□ 산학협력업체(산학협력 가족회사) 산업자문(기술지도, 경영지도, 디자인지도 등) : 건당 1점 (최고 4점)** ☞ [참고] '산업자문 운영규정'에 따라 산업 자문 실시	□ 해당 부문 실적 증빙 관련자료 (단, 산업체 방문 특강 이외의 경우는 실적물 외에도 공동활동 과정과 관련한 회의록 필첨)	연간전체 내용으로 평가
산학협력 수익실적	최고 5점	**□ 산학협력수익실적 항목 평가점수 = (외부연구수익금+지적재산권수익금+공동장비활용 수익금) ÷ 100만원** ☞[참고] 외부연구수익금: 외부기관 지원 연구용역에 따른 간접비 및 기자재·장비 구입비 합산 금액. 단, 교원 개인이 아닌 부서 차원에서 외부연구를 수탁하는 경우는 간접연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행자의 외부연구수익금으로 인정 ☞[참고] 지적재산권수익금: 자문료, 지적재산권 이전·대여 등에 따른 대학기여금액 ☞[참고] 공동장비활용 수익금: 대학정보공시에 공시된 산학협력 공동자비 활용 및 사용료 수입금	□ 산학협력단 제출 ➡ 관련 세입 회계자료 □ 비정규 교육과정 수강생의 입학기여를 실제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	연간전체 내용으로 평가
소 계	최고 30점	각 세부평가항목의 총 합산결과를 최고 30점까지 인정		

4 '대학운영 및 대외활동 영역'에 대한 세부평가기준[개정 2022.02.03., 2023.11.15.]

<table>
<tr><th>세부 평가항목</th><th>배점</th><th>세부평가기준</th><th>교원제출 증빙자료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보직 및 위원회 활동실적</td><td>최고 15점</td><td>□ 보직 및 위원회 활동 평가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분</th><th>평점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대학본부 보직
(센터 및 부속기관)</td><td>학부장/부서장</td><td>연간 15점</td></tr>
<tr><td>부처장/팀장</td><td>연간 12점</td></tr>
<tr><td>TFT</td><td>위원</td><td>3개월 이상 활동: 10점/건
3개월 미만 활동: 8점/건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재정지원
사업단</td><td>팀장</td><td>연간 10점</td></tr>
<tr><td>팀원</td><td>연간 6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학과장 (간호학부 학과장)</td><td>연간 10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각종 위원회 및 연구소 활동</td><td>연간 4점</td></tr>
</table>
□ TFT활동은 총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경우만 인정
□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를 포함하여 연간 2회 이상 회의록이 작성되어 '교원업적평가심의위원회'에서 활동성을 인정한 위원회 (단, 학사운영위원회 등과 같이 보직에 의한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되는 위원회와 교원업적평가심의위원회는 제외함)
☞[참고] 보직 활동기간이 2학기(12개월) 미만인 경우 실제 재임기간과 평점과 비례하게 산정함. 단 업적평가기 기간 중 보직기간 중 해임되는 경우 0점으로 인정
☞[참고] 보직 겸직 및 위원회 활동 등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활동 1개만 인정 단, TFT활동은 보직 및 위원회 활동과 중복 인정</td><td>□ 대학본부 부서 ➡ 교원이 참석한 다음 위원회의회의록 사본
·대학평의원회
·등록금심의위원회
·교원인사위원회
·입학전형관리위원회
·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
·공통교양교과운영위원회
·NCS교육과정운영위원회
·교육과정심의위원회
·직업기초능력향상위원회
·학과교육과정개발위원회
·교수학습지원운영위원회
·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
·산학협력운영위원회
·캡스톤디자인운영위원회
·현장실습운영위원회
·취업운영위원회
·창업운영위원회
·사회봉사센터운영위원회
·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
·국제교류협력위원회</td><td>연간전체 내용으로 평 가</td></tr>
<tr><td>대학내외 포상실적</td><td>최고 5점</td><td>□ 이사장 및 총장 포상을 받은 경우: 건당 5점
□ 외부기관의 장 포상을 받은 경우: 건당 1.5점
☞[참고] 장기근속포상과 같이 근무년수가 포상사유인 경우와 교원업적평가우수상은 제외함
□ 승진임용의 경우: 5점
□ '교직원 징계규정' 제4조 제②항에 의한 '경고'를 받은 경우: 건당 -5점
□ 교원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○ 견책 처분: -8점
○ 감봉 처분: -10점
○ 정직 처분: -15점</td><td></td><td>연간전체 내용으로 평 가</td></tr>
<tr><td>대학발전 기금 유치 실적</td><td>최고 15점</td><td>□ 발전기금유치실적 항목 평가점수 = 현물, 현금 유치, 장학금 유치 금액 ÷ 100만원
☞[참고] 대학내 구성원과 공동유치활동에 의한 경우는 전체유치금액을 공동활동자 수로 나누어 1인당 유치금액을 평가함
☞[참고] 학과의 실습기자재로 활용되는 현물유치는 환산금액의 1/10을 인정. 단, 현물유치를 위한 특별한 활동이 요구되지 않고 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현물유치는 제외함</td><td></td><td>연간전체 내용으로 평 가</td></tr>
<tr><td>대학내외 무료봉사 활동실적</td><td>최고 5점</td><td>□ 무료봉사활동기간 1일당 1점 (단, 정규수업 外 무료봉사활동만 인정)
○ 'VMS' 또는 '1365자원봉사포털' 등 공공기관 운영 자원봉사자관리시스템 발급용 증빙자료
□ 본 대학 '사회봉사센터'에서 시행하는 무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건당 0.5점
□ 입학홍보센터에서 인정하는 학과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 1건당 1점</td><td>□ 봉사활동 증빙자료 및 사회봉사센터장 확인서</td><td>연간전체 내용으로 평 가</td></tr>
<tr><td>각종 기고 및 외부강연 활동실적</td><td>최고 5점</td><td>□ 각종 외부매체 기고 활동: 건당 2점
□ 각종 대학내부 매체 기고 활동: 건당 1.5점
□ 외부강연: 건당 1.5점
□ 산학협력업체 방문 특강: 건당 1.5점
□ 재정지원사업 등 대학차원에서 계획하여 시행하는 비정규 교육과정 강의: 프로그램건당 1.5점
☞[참고] 외부강연의 경우는 '외부 강의 등 신청서'를 이용하여 관련절차에 따른 결재를 득하여 시행된 사항만을 인정함</td><td>□ 기록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</td><td>연간전체 내용으로 평 가</td></tr>
</table>

세부 평가항목	배점	세부평가기준	교원제출 증빙자료	비고
소 계	최고 30점	각 세부평가항목의 총 합산결과를 최고 30점까지 인정		

제4조(정년방식전임교원근태평가방법) 정년방식 전임교원 근태평가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.

1. 총장에 의한 근태평가 세부기준

평가사항	평가배점					배점
	S	A	B	C	D	
□ 대학·학과 특성화 및 대학·학과 운영에 대한 기여도	5	4	3	2	1	최고 5점
□ 대학 행정에 대한 협조성	5	4	3	2	1	최고 5점
□ 학생지도 및 취업지도의 충실성	5	4	3	2	1	최고 5점
□ 복무 타당성(출근·결강·휴강 등)	5	4	3	2	1	최고 5점
소 계	최고 20점					

2. 대학본부 교무위원회 위원에 의한 근태평가 세부기준

평가사항	평가배점					배점
	S	A	B	C	D	
□ 대학 규정에 대한 준수성	5	4	3	2	1	최고 5점
□ 대학본부 관련활동의 충실성	5	4	3	2	1	최고 5점
□ 대학 행사 및 각종 회의 협조성(참여성)	5	4	3	2	1	최고 5점
□ 대학·학과 특성화 및 대학·학과 운영에 대한 기여도	5	4	3	2	1	최고 5점
소 계	최고 20점					

제5조(정년방식전임교원학과공통평가) 정년방식 전임교원 학과공통평가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학과입시평가

학과공통 평가항목	배점	세부평가기준
학과입시 평가	최고 10점	□ 학과입시평가 항목 평가점수(10점 만점) = 정원내등록률점수(10점 만점) + 정원외등록률 가점 (최고 2점까지 가점) ○ 정원내등록률점수 = 정원내등록률 / 10 ○ 정원외등록률가점 = (학과정원외등록인원 / 학과입학정원) × 10

2. 학과 산학협력역량평가

구분	배점	세부평가기준	제출 증빙자료
학과 현장실습 이수율 실적	최고 10점	□ **현장실습이수율실적 항목 평가점수** **= ((현장실습이수학생수 / 현장실습대상학생수) × 100) / 10** ☞[참고] 본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이수율 평가는 자격증·면허증 등의 취득을 위하여 현장실습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학과와 그렇지 않은 학과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학과에 대해 적용함 ☞[참고] 현장실습이수학생 및 현장실습대상학생 ○ 현장실습이수학생: 교원업적평가 적용기간 동안의 현장실습대상학생 중 현장실습을 이수하여 학점을 부여받은 전체 학생 수 ○ 현장실습대상학생: 교원업적평가 적용기간 동안의 2학기(4년제 학과 경우는 4학기) 이상 수료 재학생 수의 연간 평균. 단, 외국인 유학생은 현장실습대상학생수에서 제외함(분모 및 분자 모두에서 제외) ☞[참고] 현장실습 인정기준 ○ 현장실습시간이 「4주 이상·160시간 이상」인 학생은 0.8명, 「8주 이상·320시간 이상」인 학생은 1명, 「12주 이상·480시간 이상」인 학생은 1.2명으로 환산하여 현장실습이수학생수를 산정함.	□ 학사운영처 제출 ➡ 학과별현장실습이수율(별지서식 제4-75호)
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	최고 10점	□ **사회맞춤형 교과목 운영실적 평가** ○ 연간 2개 과목 개설: 2점 ○ 연간 3개~4개 과목 개설: 3점 ○ 연간 5개 과목이상 개설: 5점 ☞[참고] 사회맞춤형 교과목 인정과목 ○ 교원업적평가기간 (2학기) 동안 산학협력처 및 교육과정개발 지원 부서에서 사회맞춤형 교목으로 인정받아 이수학생에게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교과목 □ **취업약정 학생 수 및 취업 실적 평가** ○ 취업약정학생 20명 미만이고 취업률 60% 미만인 경우: 2점 ○ 취업약정학생 20명 미만이고 취업률 60% 이상인 경우: 3점 ○ 취업약정학생 20명 이상 30명 미만이고 취업률 60% 미만인 경우: 4점 ○ 취업약정학생 20명 이상 30명 미만이고 취업률 60% 이상인 경우: 5점 ☞[참고] 취업약정 학생 및 취업 인정기준 ○ 취업약정 학생: 산학협력처에서 인정한 사회맞춤형 약정인원 ○ 취업약정 취업: 취업약정 산업체에 최종 취업한 학생수	□ 산학협력처 제출 ➡ 학과별 사회맞춤형교육과정 운영 현황 □ 산학협력처 제출 ➡ 학과별 사회맞춤형교육과정 취업실적
창업교육지원 현황	최고 10점	□ **창업교과목 개설 현황 평가** ○ 연간 학과에서 개설한 창업교과목 1개: 3점 ○ 연간 학과에서 개설한 창업교과목 2개~3개 과목: 5점 ○ 연간 학과에서 개설한 창업교과목 4개 과목 이상: 8점 ☞[참고] 창업교과목 인정기준 ○ 개설이후 폐강되지 아니하고 학생들에게 학점이 부여된 교과목에 해당 ○ 창업지원부서에서 개설한 교목은 제외이며 학과에서 주도적으로 개설한 교과목으로 창업지원부서에서 인정하는 교과목 □ **창업교과목 이수 실적 평가** ○연간 이수학생이 학과의 입학정원 100%미만인 경우: 3점 ○연간 이수학생이 학과의 입학정원 100%이상인 경우: 5점 ☞[참고] 창업교과목 이수실적 ○ 창업지원부서에서 인정하는 창업관련 교과목이수 학생수 ○ 창업지원부서에서 개설한 교목중 온라인교과목인 경우 50%만 인정	□ 산학협력처 제출 ➡ 창업교육 개설 현황 □ 학사운영처 제출 ➡ 창업교과목 이수 현황
소 계	최고 30점	학과취업지도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를 최고 30점까지 인정	

3. 학과취업지도평가기준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배점</th><th>세부평가기준</th><th>제출 증빙자료</th></tr>
<tr><td>학 과 취 업
지 도 평 가</td><td>최고
40점</td><td>□ 학과취업지도평가 항목 평가점수 = (12월 기준 취업률 / 10) × 4
□ 위의 결과에 학과 취업대상자 수 / 졸업시점 학과 교원 수에 대한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인정
<table>
<tr><th>교원1인당 취업대상자수</th><th>취업률
환산율</th><th>교원1인당 취업대상자수</th><th>취업률
환산율</th></tr>
<tr><td>25명 이상</td><td>110%</td><td>15명 이상</td><td>102%</td></tr>
<tr><td>20명 이상</td><td>105%</td><td>10명 미만</td><td>90%</td></tr>
</table>
☞[참고] 학과 교원 수 산정: 일반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은 1명은 1로, 학과공통평가영역 평가에서 제외되는 비정년방식 전임교원과 대학 내 연구실을 배정받은 초빙교원・겸임교원은 1명을 0.5로 산정함.

□ 학과 취업률 목표 난이도 가중치:
<table>
<tr><th>목표 난이도
심 의 결 과</th><th>상</th><th>중</th><th>하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>목표 난이도
가 중 치</td><td>1.12</td><td>1.0</td><td>0.9</td><td>전년도 실적 대비 낮은 목표치가 확정된 경우는 '하'로 평가하고, 기타 대내외 여건・추세를 감안하여 평가</td></tr>
</table></td><td>□ 사실확인자료: 산학협력처 제출 ➡ 학과별취업현황(별지서식 제4-14호)

□ 학과제출자료: 없음</td></tr>
<tr><td>소 계</td><td>최고
40점</td><td colspan="2">학과취업지도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를 최고 40점까지 인정</td></tr>
</table>

제6조(대학본부보직자개인역량평가) 대학본부 보직자 개인역량평가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공통역량평가: 만점 10점

구 분	공통역량 평가를 위한 참조사항
성취지향	□ 조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간・자원 등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모습을 보임 □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적 목표, 독창적인 목표를 수립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함
조직몰입	□ 조직・개인업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며, 조직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함 □ 조직목표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, 선공후사(先公後私)의 자세로 고민하여 의사결정을 내림
책 임 감	□ 조직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인식하여 어려운 일에도 스스로 나서며 어떠한 곤란도 극복하고 끝까지 마무리하려는 자세를 보임 □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여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임
혁신주도	□ 폭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음 □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, 자기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아이디어를 찾아 제안함
상호존중	□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을 아끼고 도와주며, 힘든업무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히 수행함 □ 배려를 통해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협력도 우수해 밝은 분위기를 조성함
도 덕 성	□ 모든 업무 수행에 있어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며, 행동 강령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함 □ 일상적인 상황은 물론 대부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, 교내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습관화됨

2. 직무역량평가: 만점 10점

구 분	직무역량 평가를 위한 참조사항
전문지식	□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이나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함 □ 담당업무 관련하여 교내외에서 강연을 할 수 있을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며, 이를 최신의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

구 분	직무역량 평가를 위한 참조사항
유 연 성	□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대상(개인, 조직, 업무상황 등)에 부합되게 자신의 방식을 변경, 조정하여 유연하게 접근함 □ 조직이 궁극적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유지하되, 실행을 위한 세부계획・방법을 적절하게 변경하여 적용함
판 단 력	□ 업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함 □ 일의 제조건을 빠르게 이해하고 신뢰성있는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림
정보공유	□ 자신이 습득한 업무관련 정보・지식 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노력이 우수함 □ 반대로,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임

3. 리더십역량평가: 만점 10점

구 분	리더십역량 평가를 위한 참조사항
인재육성	□ 타인의 잠재력・역량 개발과 성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 □ 진심이 담긴 칭찬과 공정한 평가는 물론 부서원들의 개발을 위한 맞춤형 피드백을 상시적으로 제시하고 독려함
솔선수범	□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부서원들을 이끌어감으로써 부서원들의 존경을 받음 □ 매사 솔선수범하여 부서원들의 본보기가 될뿐만 아니라 부서원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함
중 장 기 시 각	□ 단기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이익도 고려하여 업무를 결정하고 추진함 □ 통찰력 있는 중장기 대안을 독자적으로 수립하며, 부서원들이 이에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관리함
전 략 적 사 고	□ 대외환경의 동향 및 정보를 분석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함 □ 부서원과 의사소통을 통해 전략실행 시 장애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사적 차원의 장기적 비전과 업무진행 방향을 연계하여 전략을 수립함

제7조(비정년방식전임교원개인활동평가) 비정년방식 전임교원 개인활동 평가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‘연구 및 교육활동 영역’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[개정 2023.11.15.]

세 부 평가항목	배점	세부평가기준	교원제출 증빙자료	비고

문서번호	GCH-시행세칙-28	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	총장
제정일자	2019.12.20.		
개정일자	2023.11.15.		
면 수	15		

<table>
<tr><th>세부 평가항목</th><th>배점</th><th>세부평가기준</th><th>교원제출 증빙자료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학술활동 실적</td><td>최고 10점</td><td>□ 학술활동 실적 평가
<table>
<tr><th rowspan="2">발표 논문 등재지</th><th colspan="4">인정율</th></tr>
<tr><th>100%</th><th>70%</th><th>50%</th><th>50%미만</th></tr>
<tr><td>국제전문학술지
(SCI급/SCOPUS 학술지)</td><td>10점</td><td>8점</td><td>7점</td><td>5점</td></tr>
<tr><td>국내전문학술지
(한국연구재단 등재지・후보지)</td><td>7점</td><td>5점</td><td>3점</td><td>2점</td></tr>
<tr><td>국제일반학술지
(ISSN 번호부여 필)</td><td>7점</td><td>5점</td><td>3점</td><td>2점</td></tr>
<tr><td>국내일반학술지
(ISSN 번호부여 필)</td><td>5점</td><td>3점</td><td>2점</td><td>1점</td></tr>
<tr><td>기타 논문지
전공관련 전문저서 및 역서
연구보고서</td><td>4점</td><td>2점</td><td>1점</td><td>0점</td></tr>
</table>
□ 해당기간 교과목 운영과 관련한 교수 포트폴리오 개발: 1점/건
☞[참고] 학교의 실적으로 반영되는 중앙정부사업 사업계획서나 사업보고서: 국내전문학술지 논문과 동일하게 반영
☞[참고] 학교의 실적으로 반영되는 지자체나 산업체와 관련 사업계획서나 사업보고서: 국내일반학술지 논문과 동일하게 반영
☞[참고]논문과 동일하게 반영되는 사업은 학내기관을 통하여 관리되며,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부합되는 사업에 한함
- 교원확보, 실험실습기자재 확보, 강의실/실습실 환경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
- 1개 학과 이상의 교육과정 개발(개편) 및 운영
- 대학의 학사제도 개선 및 시범 운영(취업 제고 등)
- 산업체, 연구소, 공공기관 등과의 산학협력(인적교류, 물적교류 등) 수행
- 대학의 교수와 학생이 참여하는 연구개발(R&D) 수행
☞[참고] 인정률은 주저자, 교신저자, 공동저자 구분없이 단독 100%, 저자수2인 70%, 저자수3인 50%, 저자수4인이상 50%미만으로 함</td><td>□ 학술활동 실적물 사본</td><td>연간 전체내용으로평가</td></tr>
<tr><td>강의활동 실적</td><td>최고 5점</td><td>□ 주당 강의시수 평가
○ 주당 책임강의시수를 강의할 경우: 3점
○ 주당 책임강의시수에서 1시간 초과마다 기본점수 3점에서 1점씩 가산
○ 주당 책임강의시수에서 1시간 미달마다 기본점수 3점에서 1점씩 감산
□ 전자출강시스템의 결강률 현황에 따른 평가
○ 결강률 30% 이상: 3점 감점, 결강률 20%~30% 미만: 2점 감점, 결강률 10%~20% 미만: 1점 감점
☞[참고] 주당 책임강의시수=(1학기 책임강의시수+2학기 책임강의시수)/2</td><td>□ 학사운영처 제출 ➡ 교원 강의활동 및 전자출강시스템 활동점수</td><td>연간 전체내용으로평가</td></tr>
<tr><td>강의평가 실적</td><td>최고 5점</td><td>□ 강의평가실적 항목 평가점수 : 과목별 강의평가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 환산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[개정 2022.11.01.]
<table>
<tr><th>강의평가 평균</th><th>평점</th><th>강의평가 평균</th><th>평점</th></tr>
<tr><td>0~70미만</td><td>0점</td><td>82.5이상~85.0미만</td><td>3점</td></tr>
<tr><td>70.0이상~75.0미만</td><td>0.5점</td><td>85.0이상~87.5미만</td><td>3.7점</td></tr>
<tr><td>75.0이상~77.5미만</td><td>1.1점</td><td>87.5이상~90.0미만</td><td>4.2점</td></tr>
<tr><td>77.5이상~80.0미만</td><td>1.7점</td><td>90.0이상~95.0미만</td><td>4.7점</td></tr>
<tr><td>80.0이상~82.5미만</td><td>2.3점</td><td>95.0이상</td><td>5점</td></tr>
</table>
☞[참고] 현장실습평가 및 교육혁신원에서 인정하는 다양한 교수법 적용 교과목은 제외</td><td>□ 학사운영처 제출 ➡ 교원강의평가자료(별지서식 제4-9호)</td><td>학기별 평균의 평균으로 평가</td></tr>
<tr><td>소 계</td><td>최고 20점</td><td>각 세부평가항목의 총 합산결과를 최고 20점까지 인정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2. '학생생활 및 취업지도활동 영역'에 대한 세부평가기준

세부 평가항목	배점	세부평가기준	교원제출 증빙자료	비고
학과지도학생 제적·자퇴 현황	최고 5점	□ 해당기간 지도학생 수 대비 제적·자퇴학생 수의 비율로 평가 ○ '제적·자퇴학생수 / 연간평균지도학생수' 비율 0% 이하: 5점 ○ '제적·자퇴학생수 / 연간평균지도학생수' 비율 2% 이하: 4점 ○ '제적·자퇴학생수 / 연간평균지도학생수' 비율 4% 이하: 3점 ○ '제적·자퇴학생수 / 연간평균지도학생수' 비율 6% 이하: 2점 ○ '제적·자퇴학생수 / 연간평균지도학생수' 비율 8% 이하: 1점 ○ '제적·자퇴학생수 / 연간평균지도학생수' 비율 10% 이하: 0점 ☞[참고] 총장에 의해 학과의 지도교수 배정 특수성이 인정되어 제1·2지도교수를 운영하는 경우 제2지도교수는 위 결과의 50%에 해당하는 평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함. 단, 이때 제2지도교수로서의 실질적인 활동을 교원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제2지도교수는 별지서식 제4-17호 재학생 경력관리 상담철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☞[참고] 본 대학 학과구조조정 결과로 인하여 구조조정된 과에서 전과한 학생이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평가에서 제외함	□ 학사운영처 제출 ➡ 교원지도학생현황(별지서식 제4-10호) □ 학사운영처 제출 ➡ 학과별자퇴학생현황(별지서식 제4-11호)	연간전체 내용으로 평가
학생상담지도실적	최고 5점	□ **학생상담지도실적 항목 평가점수 = 학생 전체상담횟수 / 20회** ☞[참고] 학사·행정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·저장된 상담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함 ☞[참고] 학사·행정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·저장된 상담 실적과 실제입력일이 3개월 이상 차이나는 기록에 대해서는 불인정함(상담시점 즈음에 실시간에 준하여 기록·저장되어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상담실적에 대해서만 인정) ☞[참고] 단체상담은 학생수 만큼의 삼담횟수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회 상담으로 인정함	□ 학사운영처 제출 ➡ 교원별 학생상담지도실적 자료(별지서식 제4-74호)	연간전체 내용으로 평가
학과지도학생 취업지도 실적	최고 10점	□ 지도학생 취업지도평가: 12월 기준 취업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지도학생 취업률 / 평점 / 지도학생 취업률 / 평점 50.0%미만 / 1점 / 70.0%이상~75.0%미만 / 6점 50.0%이상~55.0%미만 / 2점 / 75.0%이상~80.0%미만 / 7점 55.0%이상~60.0%미만 / 3점 / 80.0%이상~85.0%미만 / 8점 60.0%이상~65.0%미만 / 4점 / 85.0%이상~90.0%미만 / 9점 65.0%이상~70.0%미만 / 5점 / 90.0%이상~ / 10점 □ 위의 결과에 지도학생 수에 대한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인정 직전학년도 지도학생수 / 취업률 환산율 / 직전학년도 지도학생수 / 취업률 환산율 25명 이상 / 110% / 15명 이상 / 102% 20명 이상 / 105% / 10명 미만 / 90% ☞[참고] 취업지도실적 근거자료: 산학협력처에서 취합하는 직전학년도 졸업생 취업통계 조사자료(12월 기준 취업률 평가자료)를 활용함 ☞[참고] 총장에 의해 학과의 지도교수 배정 특수성이 인정되어 제1·2지도교수를 운영하는 경우 제2지도교수는 위 결과의 50%에 해당하는 평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함. 단, 이때 제2지도교수로서의 실질적인 활동을 교원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제2지도교수는 별지서식 제4-17호 재학생 경력관리 상담철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	□ 학사운영처 제출 ➡ 교원지도학생현황(별지서식 제4-10호) □ 산학협력처 제출 ➡ 졸업생 취업통계 자료 □ 기획처 제출 ➡ 교원별 지도학생취업현황(별지서식 제4-64호)	직전학년도 졸업생의 6·12월 취업률로 평가
소 계	최고 20점	각 세부평가항목의 총 합산결과를 최고 20점까지 인정		

3 '대학운영 및 대외활동 영역'에 대한 세부평가기준[개정 2022.02.03.]

<table>
<tr><th>세 부
평가항목</th><th>배점</th><th>세부평가기준</th><th>교원제출 증빙자료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보직 및
위원회
활동실적</td><td>최고
15점</td><td>□ 보직 및 위원회 활동 평가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분</th><th>평점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대학본부 보직
(센터 및 부속기관)</td><td>학부장/부서장</td><td>연간 15점</td></tr>
<tr><td>부처장/팀장</td><td>연간 12점</td></tr>
<tr><td>TFT</td><td>위원</td><td>3개월 이상 활동: 10점/건
3개월 미만 활동: 8점/건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재정지원
사업단</td><td>팀장</td><td>연간 10점</td></tr>
<tr><td>팀원</td><td>연간 6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학과장 (간호학부 학과장)</td><td>연간 10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각종 위원회 및 연구소 활동</td><td>연간 4점</td></tr>
</table>
□ TFT활동은 총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경우만 인정
□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를 포함하여 연간 2회 이상 회의록이 작성되어 '교원업적평가심의위원회'에서 활동성을 인정한 위원회 (단, 학사운영위원회 등과 같이 보직에 의한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되는 위원회와 교원업적평가심의위원회는 제외함)
☞[참고] 보직 활동기간이 2학기(12개월) 미만인 경우 실제 재임기간과 평점과 비례하게 산정함. 단 업적평가기 기간 중 보직기간 중 해임되는 경우 0점으로 인정
☞[참고] 보직 겸직 및 위원회 활동 등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활동 1개만 인정 단, TFT활동은 보직 및 위원회 활동과 중복 인정</td><td>□ 대학본부 부서
➡ 교원이 참석한 다음 위원회 의회의록 사본
·대학평의원회
·등록금심의위원회
·교원인사위원회
·입학전형관리위원회
·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
·공통교양교과운영위원회
·NCS교육과정운영위원회
·교육과정심의위원회
·직업기초능력향상위원회
·학과교육과정개발위원회
·교수학습지원운영위원회
·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
·산학협력운영위원회
·캡스톤디자인운영위원회
·현장실습운영위원회
·취업운영위원회
·창업운영위원회
·사회봉사센터운영위원회
·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
·국제교류협력위원회</td><td>연간전체
내용으로
평 가</td></tr>
<tr><td>대학내외
포상실적</td><td>최고
5점</td><td>□ 이사장 또는 총장 포상을 받은 경우: 건당 5점
□ 외부기관의 장 포상을 받은 경우: 건당 1.5점
☞[참고] 장기근속포상과 같이 근무년수가 포상사유인 경우와 교원업적평가우수상은 제외함
□ 승진임용의 경우: 5점
□ '교직원 징계규정' 제4조 제②항에 의한 '경고'를 받은 경우: 건당 -5점
□ 교원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○ 견책 처분: -8점
○ 감봉 처분: -10점
○ 정직 처분: -15점</td><td></td><td>연간전체
내용으로
평 가</td></tr>
<tr><td>대학발전
기금 유치
실 적</td><td>최고
10점</td><td>□ 발전기금유치실적 항목 평가점수 = 현물, 현금 유치, 장학금 유치 금액 ÷ 100만원
☞[참고] 대학내 구성원과 공동유치활동에 의한 경우는 전체유치금액을 공동활동자 수로 나누어 1인당 유치금액을 평가함
☞[참고] 학과의 실습기자재로 활용되는 현물유치는 환산금액의 1/10을 인정. 단, 현물유치를 위한 특별한 활동이 요구되지 않고 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현물유치는 제외함</td><td></td><td>연간전체
내용으로
평 가</td></tr>
<tr><td>대학내외
무료봉사
활동실적</td><td>최고
5점</td><td>□ 무료봉사활동기간 1일당 1점씩 가산(단, 정규수업 外 무료봉사활동만 인정)
○ 'VMS' 또는 '1365자원봉사포털' 등 공공기관 운영 자원봉사자관리시스템 발급용 증빙자료
□ 본 대학 '사회봉사센터'에서 시행하는 무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건당 0.5점씩 가산
□ 입학홍보센터에서 인정하는 학과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 1건당 1점</td><td>□ 봉사활동 증빙자료 및 사회봉사센터장 확인서</td><td>연간전체
내용으로
평 가</td></tr>
<tr><td>소 계</td><td>최고
20점</td><td colspan="2">각 세부평가항목의 총 합산결과를 최고 20점까지 인정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문서번호	GCH-시행세칙-28	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	총장
제정일자	2019.12.20.		
개정일자	2023.11.15.		
면 수	15		

제8조(교원업적평가 표준서식) 규정 제10조 교원업적평가 및 심의에 필요한 표준서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별지서식 번 호	서식내용	용도	작성자・제출자
제4-1호	교원업적평가심의결과	□ 각 교원별 업적평가 최종심의 결과	교원업적평가심의위원회
제4-2호	교원업적기술서	□ 교원개인별 연간 업적활동에 대한 세부기술 □ 교원개인별 업적평가 기초자료	교원업적평가 대상 교원
제4-4호	교원개인별근태평가서	□ 교원 개인의 근무자세에 대한 평가 □ 교원개인별평가영역의 근태평가 부문 평가자료 □ 평가시 별지서식 제4-16호, 18호 및 교원근태기술서 교무위원회 심의자료 참조	총장
제4-6호	교원개인별근태평가서	□ 교원 개인의 근무자세에 대한 평가 □ 교원개인별평가영역의 근태평가 부문 평가자료 □ 평가시 별지서식 제4-16호, 18호 및 교원근태기술서 교무위원회 심의자료 참조	대학본부 보직자
제4-7호	강의평가서	□ 학생들의 강의만족도 평가자료 □ 교원별 강의평가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	수강학생
제4-8호	교원담당교과목현황	□ 전 교원의 학기별 교과목담당 현황 □ 교원업적기술서 작성내용 사실확인 자료	학사운영처
제4-9호	교원강의평가자료	□ 전 교원의 강의평가결과자료 □ 교원업적평가 사실관계 증빙자료	
제4-10호	교원지도학생현황	□ 전 교원의 학기별 지도학생(학과/동아리) 현황 □ 교원업적기술서 작성내용 사실확인 자료	
제4-11호	학과별자퇴학생현황	□ 전 교원의 학기별 지도학생 자퇴현황 □ 교원업적기술서 작성내용 사실확인 자료	
제4-12호	학과별등록률현황	□ 각 학과별 신입생등록률 현황 □ 학과공통평가영역의 학과입시 평가용 자료	입학업무 소관부서
제4-13호	학과별산학협력체결및유지현황	□ 학과별 산학협력 체결 및 유지기관 현황 □ 학과산학협력역량기술서 작성내용 사실확인 자료	산학협력 소관부서
제4-14호	학과별취업현황	□ 학과별 졸업생 취업률 현황 □ 교원업적기술서 작성내용 사실확인하는 자료	
제4-16호	기타학사운영협조현황	□ 전 교원 연간 학사운영협조와 관련된 자료 □ 교원개인별 근태평가를 위한 기초자료	대학본부 각 부서
제4-19호	교원업적평가재심의신청서	□ 교원업적평가 최종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서	본 대학 전 교원 재심의 신청교원
제4-20호	교원업적평가재심의결과	□ 교원업적평가 재심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 결과	교원업적평가재심의위원회
제4-64호	교원별지도학생취업현황	□ 교원별 지도학생에 대한 취업지도 결과 현황 □ 교원업적기술서 작성내용 사실확인 자료	평가업무 소관부서
제4-73호	학과산학협력역량기술서	□ 학과산학협력역량 학과별 자체 작성자료 □ 학과공통평가영역의 학과산학협력역량 부문 평가 및 심의 기초자료	교원업적평가 대상 교원 소속 학과
제4-74호	교원별학생상담지도실적	□ 교원별 연간 학생상담지도 실적(학사・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의 기록・관리자료) 정리자료 □ 교원업적기술서 작성내용 사실확인 자료	학사운영처
제4-75호	학과별현장실습이수율	□ 각 학과별 현장실습이수율 정리자료 □ 학과공통평가영역의 학과산학협력역량 부문 평가 및 심의를 위한 학과산학협력역량기술서 사실확인자료	학사운영처
제4-76호	학과별캡스톤디자인실적률	□ 각 학과별 캡스톤디자인 실적률 정리자료 □ 학과공통평가영역의 학과산학협력역량 부문 평가 및 심의를 위한 학과산학협력역량기술서 사실확인자료	학사운영처
제4-77호	학과별산학협력체결률	□ 각 학과별 산학협력체결률 정리자료 □ 학과공통평가영역의 학과산학협력역량 부문 평가 및 심의를 위한 학과산학협력역량기술서 사실확인자료	산학협력 소관부서
제4-78호	학과별산학협력위원회구성현황	□ 각 학과별 캡스톤디자인 실적률 정리자료 □ 학과공통평가영역의 학과산학협력역량 부문 평가 및 심의를 위한 학과산학협력역량기술서 사실확인자료	평가업무 소관부서

문서번호	GCH-시행세칙-28	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	총장
제정일자	2019.12.20.		
개정일자	2023.11.15.		
면 수	15		

별지서식 번 호	서식내용	용도	작성자・제출자
제4-79호	학과별겸임교원위촉현황	□ 각 학과별 연간 겸임교원 위촉현황 정리자료 □ 학과공통평가영역의 학과산학협력역량 부문 평가 및 심의를 위한 학과산학협력역량기술서 사실확인자료	평가업무 소관부서
제4-80호	학과별외래강사강의담당현황	□ 각 학과별 연간 외래강사 강의담당 현황 정리자료 □ 학과공통평가영역의 학과산학협력역량 부문 평가 및 심의를 위한 학과산학협력역량기술서 사실확인자료	학사운영처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